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

[부산지방법원 2012. 11. 23. 2012고합802,880(병합),881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 외 6인

【검 사】김성동, 조민우(기소, 공판), 최재만, 이동균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이성섭 외 7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2를 판시 제2의 가 내지 사 죄 및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, 판시 제2의 아, 자 죄에 대하여 벌금 3,000,000원에, 피고인 3을 징역 4월에, 피고인 4, 피고인 5, 피고인 6, 피고인 7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, 피고인 3, 피고인 4, 피고인 5, 피고인 6, 피고인 7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2,000,000원을, 피고인 2로부터 48,000,000원을, 피고인 4로부터 4,000,000원을, 피고인 5로부터 4,850,000원을, 피고인 6으로부터 2,000,000원을 각 추징한다.

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. 2. 24.자 및 2012. 3. 23.자 각 공소외 8에 대한 자원봉사 대가 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, 2012. 4. 1.자 피고인 6에 대한 자원봉사 대가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. 4. 1.자 자원봉사 대가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【이유】

1